

배포 2026. 5. 20.(수)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5. 20.(수) 국무회의 종료 시

(지면) 2026. 5. 20.(수) 국무회의 종료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감이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필요성 및 지역별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관련 국정과제】 55-3.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방향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교육감이 과학고, 외교·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진우 (044-203-6397)
		담당자	교육연구관	윤강우 (044-203-6401)
			교육연구사	윤금준 (044-203-6400)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책임자	과장	마소정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안중선 (044-203-6688)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689)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학계열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계·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7. ~ 3. 9., 2. 4. ~ 3. 16.)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제3호 중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1조의4”를 “제91조의5”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제91조의4”를 “제91조의5”로 한다.

제76조의3제4호 중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제91조의4”를 “제91조의5”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한다.

제79조제1항제4호 중 “제91조의3제3항제2호”를 “제91조의4제3항제2호”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나목 중 “제91조의3”을 각각 “제91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의4”를 “제91조의5”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한다.

제90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필요성 및 지역별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현황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를 각각 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로 하고,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육성) ① 교육감은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5조의5제2항 중 “제91조의3제1항제1호”를 “제91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5조의7 중 “제91조의3제6항”을 “제91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91조의3제6항”을 “제91조의4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을 각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바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생 략) 3. <u>제91조의3</u>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u>제91조의4</u> 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생 략)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91조의4</u> ----- ----- 4. <u>제91조의5</u> ----- ----- 5. (현행과 같음)
제44조(학기) ① (생 략)	제44조(학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 3. (생략)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

② ----- 제91조의4-----

-- 제91조의5-----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1조의4---

제91조의5-----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③ (생략)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생략)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

----- 제91조의4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제91조의4제3항제2호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생략)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생략)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

-----.

1. (현행과 같음)

2. 제91조의4-----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91조의4-----

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3. (생략)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생략)

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 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③ ~ ⑧ (생략)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 ⑥ (생략)

⑦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1. ~ 3. (현행과 같음)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91조의

4-----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1조의3·제91조의4 (생략)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

제91조의4·제91조의5 (현행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와 같음)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91조의4제1항제1호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7(청문) -----

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 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생략)
3.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생략)

----- 제91조의4제6항-----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

2. (현행과 같음)

3. 제91조의4제6항-----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689 (044) 203 - 6401